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사용전검사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중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사본 및 법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정기검사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중 “발전설비”를 각각 “발전설비(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원격감시 및 제어) 제25조와 제26조 등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2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설비의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9. 제43조제1항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안전공사에 통보

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8, 별표9, 별표11, 별표16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사용전검사시 제출할 수 있다)</u>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u>사본을 첨부하여</u>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사본 및 법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정기검사시 제출할 수 있다)---</u>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생략)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u>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를 지
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
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
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
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생 략)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
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생 략)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8조제1항 및 제4항-----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
모)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발

전설비(원격감시 및 제어기

능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

2. -----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
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
정한다)

가. (생략)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
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생략)

<신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나. (생략)

<신설>

-

가. (현행과 같음)

나. ----- 발
전설비(원격감시 및 제어기
능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

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원격감시 및 제어) 제25
조와 제26조 등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설비
의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
인 공사

7.·8. (생략) <u><신설></u> ③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u>제43조제1항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안전공사에 통보</u>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별표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생략)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가. 설치공사	(생략)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경공사			나. 변경공사		
1)	(생략)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생략)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가) ~ (1)~(5)	(생략)	(생략)	가) ~ (1)~(5)	(생략)	(생략)
(6) 풍력설비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 설치 또는 대체
나)(생략)			나)(생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 대체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의 2분의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의 2분의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현행			개정안		
공사의 종류 <신 설>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신설>	공사의 종류 (다) 부 대설비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1 이상(정기 검사 기간 이내 구조물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2) 연료 전지설비			(2) 연료전 지설비		
(가) 연료전 지	출력 1만킬로와 트 이상의 연료 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중 략)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연료전지의 설 치 또는 전체 대체	(가) 연료전 지	출력 1만킬로와 트 이상의 연료 전지의 설치, 전 체대체 또는 스 택 대체 (중 략)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 대체
(3) 전 기저장장치 (가) 이 차전지	용량 1만킬로 와트h 이상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 체	용량 1만킬로와트h 미만의 이차전지 설 치 또는 전체 대체	(3) 전기 저장장치 (가) 이 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 트h 이상의 이 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모듈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 간 이내 모듈 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 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 를 포함한다)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h 미만의 이차전지 설 치 또는 전체모듈 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 간 이내 모듈을 교체 하여 누적량이 2 분의1 이상 초과 한 경우를 포함하 다) 대체
(나) 전 력변환장 치	출력 1만킬로와 트 이상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 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나) 전 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 트 이상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 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 치의 설치 또는 대 체
(다) 부 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 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 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 절을 위한 공조시설 의 설치 또는 대체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75킬로와트 이 상의 비상용예비발전 설비 설치 또는 대체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설치(비상부하 포함) 또는 대체
(신 설)			비고 1. 전기저장장치는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 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 5. (생략)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 신 설 >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 가스용 연료연소설비, (신설)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 12. (생략)	[별표 3] <u>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u>(제6조제4항 관련) 1. ~ 5. (생략)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 사 가. <u>공장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에 한한다.)</u> 나.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 가스용 연료연소설비, <u>풍력 타워</u> 등에 관한 공 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 12. (생략)

현행				개정안			
[별표4]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4]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 (3) (생략)	생략	생략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기저장장치(전기저장장치의 경우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을 제외하며,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전선로·변전소와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 (3) (생략)	생략	생략
	(4)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발전기 계통(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2년 이내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가.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2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 <신설>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	2년 이내	
					(9)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전선로·변전소	4년 이내	

현행				개정안			
2. 자가용전기설비가. (생략)	(1)~(7) (생략)	(생략)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가. (생략)	(1)~(7) (생략)	(생략)	(생략)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음식점,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신설)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추 둔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년마다 2개월 전후 3년마다 2개월 전후 4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음식점,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 (1)에서 (2)까지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추 둔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년마다 2개월 전후 3년마다 2개월 전후 4년 이내	
비 고: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신설>				비 고: 1. (좌동)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직인력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직인력
1. 발전설비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1) ~ (3) (생략)	1. 발전설비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1) ~ (3) (생략)
2.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하는 사업장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1) ~ (3) (생략)	2.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하는 사업장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1) ~ (3) (생략)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1) ~ (2) (생략)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1) ~ (2) (생략)
비고 1. ~ 3. (생략) 4.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토목분야 제외) 나. ~ 다. (생략)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u>전기, 토목(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월류형 보의 경우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설치한 경우 3천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u> 분야 나. ~ 다. (생략)			

현행	개정안
[별표 9] <u>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u>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신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표 생략>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별표 9] <u>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u>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u>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다음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u> <u>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u>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표 생략>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table><tr><th>교육과정</th><th>교육대상자</th><th>교육기간</th></tr><tr><td>가.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td><td>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 rowspan="2">3년마다 1회 이상</td></tr><tr><td>나.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I)</td><td>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r><tr><td>다.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td><td>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선 임 된 날 부 터 6 개 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td></tr></table>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 신 설 > < 신 설 > 3. 행정사항 가. ~ 나.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 라. (생 략) (신설)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I)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 임 된 날 부 터 6 개 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	[별표 1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table><tr><th>교육과정</th><th>교육대상자</th><th>교육기간</th></tr><tr><td>가.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td><td>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 rowspan="2">3년마다 1회 이상</td></tr><tr><td>나.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I)</td><td>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r><tr><td>다.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td><td>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선 임 된 날 부 터 6 개 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td></tr></table>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신재생에너지원별 안전관리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3. 행정사항 가. ~ 나.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 라. (생 략)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관(GWO 등)으로부터 인증받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I)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 임 된 날 부 터 6 개 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I)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 임 된 날 부 터 6 개 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I)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 임 된 날 부 터 6 개 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																					

현행	개정안
[별표 16]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신 설) 1) <u>감전사고(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u> 2) <u>전기설비사고</u> 가) ~ 사) (생략) <신 설 > 나. (생략)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의 사항을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	[별표 16]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u>화재사고</u> 가) <u>인명피해(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2명 이상 발생한 경우)</u> 나) <u>재산피해(소방서 추정 1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u> 다) <u>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 정도와 무관)</u> 2) <u>감전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1명 이상 발생한 경우)</u> 3) <u>전기설비사고</u>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용량 20킬로와트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 또는 설비고장으로 인하여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u> 나. (현행과 같음)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보(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유선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규격 등)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정전규모 등)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u>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u> 관련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로 통보)

현행

[별지 제4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양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 리 기 간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신 설>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회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 서류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양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 리 기 간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회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 서류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 (사용전검사시 제출 할 수 있다)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현행

[별지 제6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

<신 설>

전기설비 개요

검사희망 연월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위와 같이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신 설>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	→	결정	→	검사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전기설비 개요

검사희망 연월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위와 같이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표(정기검사이시 제출 할 수 있다)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	→	결정	→	검사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현행

[별지 제15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①업체코드			
신고인	(상주)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사업자]	④ 주소	
	[자가용전기설비의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소유자·점유자]		
	(위탁사업자)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안전관리전문	⑨ 주소	
	[시설물관리전문	⑩ 대표자 성명	⑪ 전화번호

전기설비	⑫설치장소의 주소	
	⑬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⑭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kW 전 압 V
		<신 설> kW 전 압 V
		기타() kW 전 압 V
	⑮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자	⑯ 선임·해임 구분	⑰ 성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기술자격사항	⑳ 선임·해임일	㉑ 구분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210mm×297mm[박장지(80g/㎡)]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①업체코드			
신고인	(상주) [전기사업자]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④ 주소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전기안전관리전문]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회사명 또는 상호
	[시설물관리전문]	⑨ 주소	
		⑩ 대표자 성명	⑪ 전화번호

전기설비	⑫설치장소의 주소	
	⑬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⑭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kW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 압 V
		기타() kW 전 압 V
	⑮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자	⑯ 선임·해임 구분	⑰ 성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기술자격사항	⑳ 선임·해임일	㉑ 구분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210mm×297mm[박장지(80g/㎡)]

현행

[별지 제16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① 업체코드			
신고인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전기설비	⑦ 설치장소의 주소		
	⑧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⑨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신 설>	
		<신 설>	
	⑩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기타()	kW 전 압 V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 는 자	⑪ 등록번호		⑫ 전화번호
	⑬ 회사명 또는 상호		⑭ 대표자성명
	⑮ 주소		⑯ 선·해임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① 업체코드			
신고인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전기설비	⑦ 설치장소의 주소		
	⑧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⑨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 압 V
	⑩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기타()	kW 전 압 V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 는 자	⑪ 등록번호		⑫ 전화번호
	⑬ 회사명 또는 상호		⑭ 대표자성명
	⑮ 주소		⑯ 선·해임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현행

[별지 제18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업체코드					
(변경) 신고인	(상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사용자	주소 또는 소재지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업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안전관리전문	주소 또는 소재지			
	[] 시설물관리전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신 설>			
			기 타	kW	전 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 안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선·해임일	구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 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안

[별지 제18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업체코드					
(변경) 신고인	(상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사용자	주소 또는 소재지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업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안전관리전문	주소 또는 소재지			
	[] 시설물관리전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량		kW	전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kW	전압	V
				연료전지	kW	전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압	V
				기타	kW	전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량		kW	전압	V
용도				휴지기간			

전기 안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선·해임일	구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 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현행

[별지 제19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선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 해임신고 **증명서**
☐ 변경신고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업체코드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신 설>	
		<신 설>	
		기타()	kW 전 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선·해임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료 []해임신고)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 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	---

210mm×297mm [백상지 (80g/㎡)]

개정안

[별지 제19호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선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 해임신고 **증명서**
☐ 변경신고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업체코드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kWh 전 압 V
		기타()	kW 전 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선·해임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료 []해임신고)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 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	---

210mm×297mm [백상지 (80g/㎡)]

현행

[별지 제20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신고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kW, V	kW, V		
	발전설비	상 용	kW, V	kW, V		
		비 상 용	kW, V	kW, V		
		태양에너지	kW, V	kW, V		
		<신 설>				
		<신 설>				
		기타()	kW, V	kW, V		
	휴지설비		kW, V	kW, V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안

[별지 제20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신고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kW, V	kW, V		
	발전설비	상 용	kW, V	kW, V		
		비 상 용	kW, V	kW, V		
		태양에너지	kW, V	kW, V		
		연료전지	kW, V	kW, V		
		기타()	kW, V	kW, V		
		연계 전기저장장치	유 [] 무 []	유 [] 무 []		
	휴지설비		kW, V	kW, V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